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49호 2011. 9. 7.(수)

【규 칙】

○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73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
규칙) 1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	☐ 개정 이유 ○ 이동목욕봉사 서비스사업이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,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원 정원기준은 현재와 같은 7명으로 유지하되 전산요원 1명을 감하고 운영요원 1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 ☐ 주요 내용 ○ 자원봉사센터 직원정원기준인 별표 1의 내용 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명칭 변경하고, 운영요원 2명을 운영요원 3명으로 증원하고, 전산요원 1명은 감원하는 것으로 변경 ○ 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에 대한 별표2의 내용 중 전산요원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되 이동목욕봉사 서비스 관련 사항 삽입 ○ 자원봉사센터직원 자격기준 변경(별표 3) - 전산요원에 관한 사항 삭제 - 사무국장, 운영팀장,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중 제5호를 각각 삭제 - 운영요원 자격기준 중 이동목욕봉사서비스 사업관련 운영요원 자격사항 신설

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2011. 9. 7.

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473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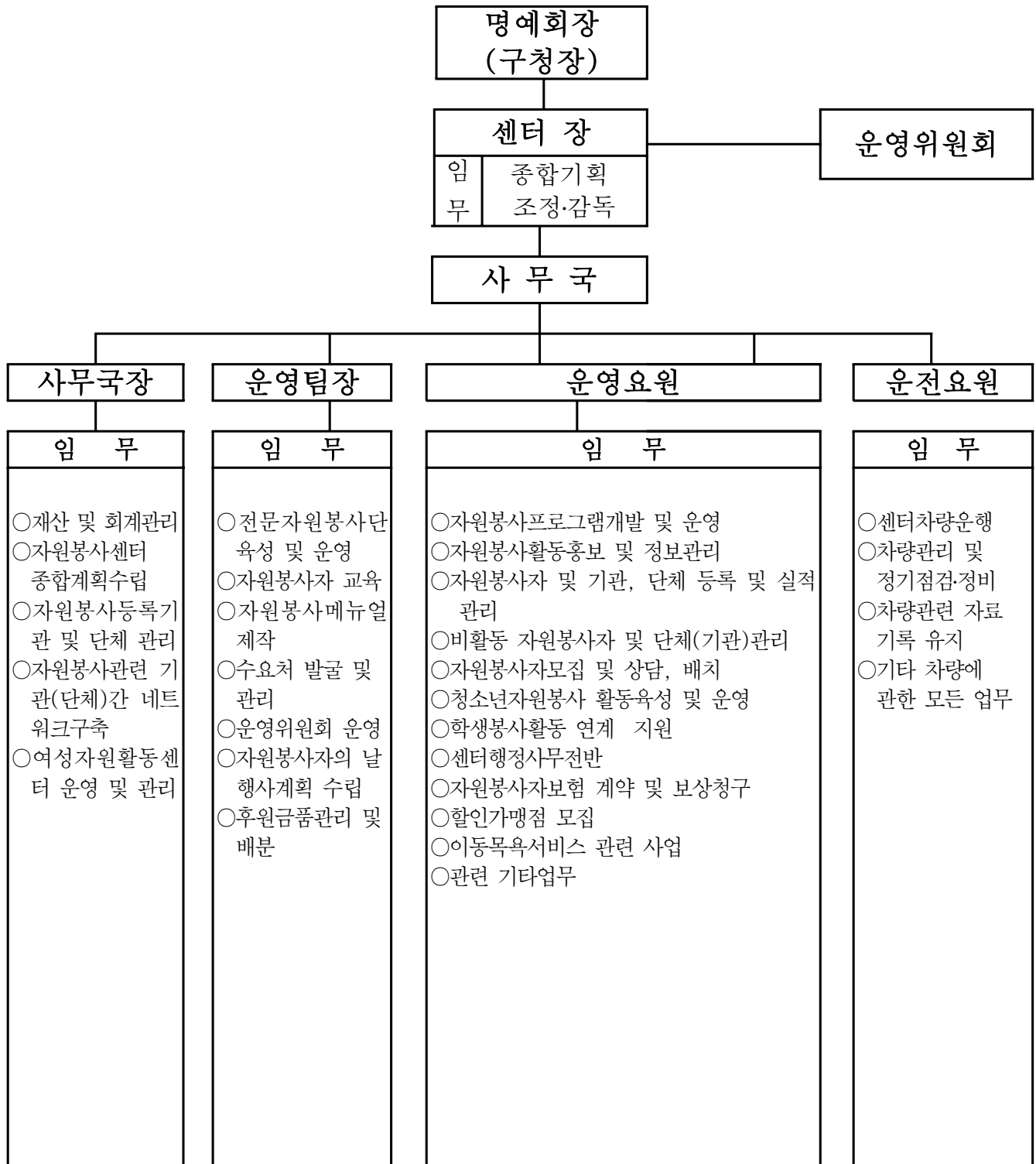
[별표1]

직원 정원 기준(제3조 관련)

구분 인원(명)	센터 장	사무국장	운영팀장	운영요원	운전요원
7	1	1	1	3	1

[별표2]

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및 임무(제4조 관련)



[별표3]

자원봉사센터직원 자격 기준(제6조 관련)

구 분	자 격 기 준
센터 장	1.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.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사무국장	1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. 6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 4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운영팀장	1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. 7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4.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운영요원	1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. 8급이하 퇴직공무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보조원으로 2년이상 종사한 자 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4.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(단, 이동목욕봉사 서비스사업관련 운영요원은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)
운전요원	1.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